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및 진료비 게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정준호 의원
- 의안번호 : 제2333호
- 발의일자 : 2025년 1월 24일
-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 2. 제 안 이 유

-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와 진료비 공시제(진료비 현황 조사·분석·공개)가 시행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느끼는 진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알권리 향상과 사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정책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취약계층의 진료비 지원 및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 관련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반려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함 (안 제11조)

라.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부칙 제2조)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정책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 결과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2021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sup>1)</sup>을 통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사업’<sup>2)</sup>을 통해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의 정책 및 제도로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홍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수의사법」 제20조<sup>3)</sup>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20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동물병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를 별도 조례에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임.

1)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추진실적('22~'24)  
- 지정병원: ('24) 113개소, ('23) 92개소, ('22) 68개소  
- 지원실적: ('24) 2,539마리 ('23) 1,864마리, ('22) 1,388마리

3)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진료비 정보 공개현황>



The screenshot shows the 'Veterinary Fee Information' page on the Ministry's website. It includes a search sidebar on the left with filters for region (서울특별시), weight (체중 5kg), and care type (초진 진료료, 재진 진료료).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해당 지역별 진료비 평균' (Average Veterinary Fees by Region) with a map of South Korea. A callout for Chungcheong (중구) shows a fee of 10,000 KRW. A '전국 시/도' (National City/Province) map shows fees for other regions like Gyeonggi (8,900 KRW), Seoul (10,000 KRW), and Jeju (8,000 KRW).

- 한편,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주요 목적 및 내용은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sup>4)</sup>한 것이나 진료비 게시는 「수의사법」 제20조 개정<sup>4)</sup>에 따라 의무사항이 된바, 동 조례 폐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